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 6425

제출연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: 대구광역시장

1. 폐지이유

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

나.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
다.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 등(※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. ~ 8. 2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4) 갑질영향심사 : 해당없음

5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, 민간단체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반납할 수 있다.

관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

- 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- 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- 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-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